

- 2026년 제9회 대전광역시 중구 -
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채용계획 공고

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(도시경관 디자인)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6일
대전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

I 임용 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인 원	근무기간*	근무예정부서
도시경관 디자인	지방시설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임용일로부터 2년 /주 40시간	건축과

* 근무 기간은 연장필요시 근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II 임용 대상 직무내용

임용분야	주요 업무
도시경관 디자인	○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 ○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협의·조정 ○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 및 공사감독 등 사업관리 ○ CPTED 등 공공디자인 일반관리 등

III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
-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

IV 응시자격 요건

※ 적용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

□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.
- (응시연령) 18세 이상 / 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
- (성 별) 제한 없음 /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
- (거 주 지) 제한 없음 / 대한민국 국적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 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
 - 바. 삭제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응시 자격요건

구 분	임용자격 기준
도시경관 디자인	<p>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【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】</p> <p>–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분야에서 <u>도시디자인, 도시경관 업무 경력</u>*</p> <p>*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</p> </div>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.

/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

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

V 근무조건 및 보수

- (계약기간) 2년 /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- (근무시간) 주 40시간 / 1일 8시간, 5일 근무
- (보수기준)

- 연 봉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및 제35조(신규임용연봉책정) 제3항 규정에 의거임용구분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능력, 자격,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연봉 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별도 지급

< 2026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/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[별표13] >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7급(상당)	70,782천원	50,272천원	

- *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(적용제외)제1항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시행령」 제3조의2(별정직·임기제공무원의 보험 가입)에 의거,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.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*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(예: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)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
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
VI 시험방법

□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임용 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(서류전형 기준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,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참고

□ 2차시험 : 면접시험 / 1차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

- 인성 · 공직관 ·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· 중 ·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

○ (평정 요소)

평정 요소	❶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	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❹ 예의.품행 및 성실성
	❺ 창의력.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	

○ (합격자 선발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평정 성적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
불합격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한 경우 ■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
-----------	---

✓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선발 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
다만, 동순위자 중 *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
* 취업지원 대상자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VII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 시험공고	면접시험*		최종합격자 발표
		일시	장소	
11. 6.(금) ~ 11. 10.(화) / 3일간	11. 13.(금) / 예정	11. 17.(화) ~ 11. 18.(수) / 예정		11. 20.(금) / 예정
	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		

* 서류전형 합격자,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“중구청 홈페이지 - 채용공고” 에 게시

VIII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

□ 응시원서 접수

○ (원서교부)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 게시

○ (접수기간) 2026. 11. 6.(금) ~ 11. 10.(화) 09:00~18:00

* 토요일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○ (접 수 처) 대전광역시 중구청(2층) 행정지원과 인사팀

○ (접수방법)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(우체국 익일특급) 접수

- 주소: (34939)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(대흥동),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

※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 기준이며 반드시 연락 요망 ☎042-606-6193)

※ 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(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7,000원)는 우체국 '통상환증서' 동봉 제출

※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, 통상환증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16:30까지 구입 가능

□ 제출서류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,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

○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

○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1호)

- 응시수수료 :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7,000원 / 중구청 1층 종합민원실(본관1층) 18번 창구에서 구입

○ 이력서 1부(별지서식 2호) /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

※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자기소개서 1부(별지서식 3호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서식 4호)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5호)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별지서식 6호)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서식 7호)

○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/ *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

○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,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,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
* 경력(재직)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
*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「별지서식 8호」

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

*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 명시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-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

○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

자료(자격증, 상훈 등) / 논문,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
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제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, 학교명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

IX 유의 및 기타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*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.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2(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, 학위,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 「채용공고」란에 공고합니다.
-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 - (채용관련)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과 인사팀 (☎606-6193)
 - (직무관련)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과 (☎606-6751)

직무 기술서

직무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도시경관 디자인	지방시설주사보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전광역시 중구	건축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수립 ○ 체계적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협의·조정 ○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·공사감독 등 사업관리 ○ CPTED 등 공공디자인 일반관리 등
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팀워크지향, 관계구축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기획력, 전략적 사고력, 추진력, 조정능력 등
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디자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필요 ○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사무능력 필요 ○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능력 필요
------	--

관련분야 : 청년정책 기획·운영		
응시 자 격 요 건	자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분야에서 <u>도시디자인 도시경관 업무 경력</u>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<p>※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,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</p>